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 연말정산 시기 : 계속근무자 ⇨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소득세법§134, §135 원천징수시기 특례 포함 신고·납부)  
※ 2023.3.10.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신청(반기 납부 신고자도 가능)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근로·사업·퇴직소득, 종교인소득(3월10일), 그 외 (2월말일)

<p><b>총 급여액</b> (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p> <p>○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p>	<table border="1"> <tr> <td>총급여액 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의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td> <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td> </tr> <tr> <td>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td> <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td> </tr> <tr> <td>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td> <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 </tr> </table>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p><b>근로소득금액</b>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p> <p>○ 인적공제</p>	<table border="1"> <tr> <td>기본공제 (p.111)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li> <li>·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62.12.31.이전 생)</li> <li>·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2002.1.1.이후 생)</li> <li>·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li> </ul> </td> </tr> <tr> <td>추가공제 (p.112)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1952.12.31.이전 생) 1인당 100만원</li> <li>·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li> <li>· 부녀자 공제 :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li> <li>· 한부모 공제 : 100만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적용)</li> </ul> </td> </tr> </table>	기본공제 (p.111)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li> <li>·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62.12.31.이전 생)</li> <li>·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2002.1.1.이후 생)</li> <li>·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li> </ul>	추가공제 (p.112)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1952.12.31.이전 생) 1인당 100만원</li> <li>·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li> <li>· 부녀자 공제 :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li> <li>· 한부모 공제 : 100만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적용)</li> </ul>														
기본공제 (p.111)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li> <li>·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62.12.31.이전 생)</li> <li>·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2002.1.1.이후 생)</li> <li>·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li> </ul>																		
추가공제 (p.112)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1952.12.31.이전 생) 1인당 100만원</li> <li>·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li> <li>· 부녀자 공제 :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li> <li>· 한부모 공제 : 100만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적용)</li> </ul>																		
<p>○ 연금보험료공제</p>	<p>연금보험료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li> </ul>																		
<p>○ 특별소득공제</p>	<table border="1"> <tr> <td>보험료 (p.122)</td> <td>·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td> </tr> <tr> <td>주택자금 (p.123) 공제산식 : ㉠+㉡ (㉠,㉡ 외국인도 공제 가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40%</li> <li>· 한도 : ㉠+㉡ = 400만원</li> <li>· ㉠+㉡+㉢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li> <li>· ㉠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 뒷면 참조</li> </ul> </td> </tr> </table>	보험료 (p.122)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	주택자금 (p.123) 공제산식 : ㉠+㉡ (㉠,㉡ 외국인도 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40%</li> <li>· 한도 : ㉠+㉡ = 400만원</li> <li>· ㉠+㉡+㉢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li> <li>· ㉠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 뒷면 참조</li> </ul>														
보험료 (p.122)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																		
주택자금 (p.123) 공제산식 : ㉠+㉡ (㉠,㉡ 외국인도 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40%</li> <li>· 한도 : ㉠+㉡ = 400만원</li> <li>· ㉠+㉡+㉢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li> <li>· ㉠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 뒷면 참조</li> </ul>																		
<p>○ 그 밖의 소득공제</p>	<table border="1"> <tr> <td>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한도 : 500만원·300만원·200만원)</li> <li>·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2016년 이후 가입분)</li> </ul> </td> </tr> <tr> <td>주택마련저축 (p.138)</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年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月 15만원 이하)</li> <li>· 공제액 : 납입금액의 40%(한도 : 상기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조) *총급여 7천만원 이하</li> </ul> </td> </tr> <tr> <td>벤처투자조합 출자 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액의 10%를 투자일로부터 2년내 과세기간 선택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50%)</li> <li>· 벤처기업 직접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li> <li>·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공제</li> <li>*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과 ㉡을 합한 금액의 20%</li> <li>· ㉠'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li> <li>·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li> </ul> </td> </tr> <tr> <td>신용카드 (p.146)</td> <td></td> </tr> <tr> <td>우리사주조합 출연금</td> <td>·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한도 : 400만원, 벤처 1,500만원)</td> </tr> <tr> <td>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td> <td>· 임금삭감액(직전 임금총액-당해 임금총액)의 50%공제(한도 : 1,000만원)</td> </tr> <tr> <td>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td> <td>·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공제(한도 : 240만원)</td> </tr> </table>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한도 : 500만원·300만원·200만원)</li> <li>·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2016년 이후 가입분)</li> </ul>	주택마련저축 (p.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年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月 15만원 이하)</li> <li>· 공제액 : 납입금액의 40%(한도 : 상기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조) *총급여 7천만원 이하</li> </ul>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액의 10%를 투자일로부터 2년내 과세기간 선택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50%)</li> <li>· 벤처기업 직접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li> <li>·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공제</li> <li>*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과 ㉡을 합한 금액의 20%</li> <li>· ㉠'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li> <li>·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li> </ul>	신용카드 (p.14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한도 : 400만원, 벤처 1,500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임금삭감액(직전 임금총액-당해 임금총액)의 50%공제(한도 : 1,0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공제(한도 : 24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한도 : 500만원·300만원·200만원)</li> <li>·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2016년 이후 가입분)</li> </ul>																		
주택마련저축 (p.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年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月 15만원 이하)</li> <li>· 공제액 : 납입금액의 40%(한도 : 상기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조) *총급여 7천만원 이하</li> </ul>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액의 10%를 투자일로부터 2년내 과세기간 선택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50%)</li> <li>· 벤처기업 직접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li> <li>·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공제</li> <li>*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과 ㉡을 합한 금액의 20%</li> <li>· ㉠'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li> <li>·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li> </ul>																		
신용카드 (p.14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한도 : 400만원, 벤처 1,500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임금삭감액(직전 임금총액-당해 임금총액)의 50%공제(한도 : 1,0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공제(한도 : 240만원)																		
<p>○ 세액감면</p>	<table border="1"> <tr> <td>조세조약상 감면 (p.163)</td> <td>· 원어민교사, 조세조약상 면세조건 충족 시 면세 혜택</td> </tr> <tr> <td>중소기업취업자 감면 (p.165) (청년 90%, 청년 외 70%)</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5년, 연간 150만원 한도</li> <li>· 대상 : 청년(만 15세~34세), 청년 외(60세 이상자, 장애인, 동종업종 재취업 경력단절여성)</li> </ul> </td> </tr> <tr> <td>기타세액감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li> <li>·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li> </ul> </td> </tr> </table>	조세조약상 감면 (p.163)	· 원어민교사, 조세조약상 면세조건 충족 시 면세 혜택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p.165) (청년 90%, 청년 외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5년, 연간 150만원 한도</li> <li>· 대상 : 청년(만 15세~34세), 청년 외(60세 이상자, 장애인, 동종업종 재취업 경력단절여성)</li> </ul>	기타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li> <li>·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li> </ul>												
조세조약상 감면 (p.163)	· 원어민교사, 조세조약상 면세조건 충족 시 면세 혜택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p.165) (청년 90%, 청년 외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5년, 연간 150만원 한도</li> <li>· 대상 : 청년(만 15세~34세), 청년 외(60세 이상자, 장애인, 동종업종 재취업 경력단절여성)</li> </ul>																		
기타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li> <li>·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li> </ul>																		
<p>○ 세액공제</p> <p><b>표준세액공제 (13만원)</b>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p> <p><b>결정세액</b></p> <p>○ 기납부세액</p> <p><b>납부 또는 환급세액</b></p>	<table border="1"> <tr> <td>근로소득세액공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분 30%공제</li> <li>· 한도 : 총급여액 3천3백이하(74만원), 7천만원 이하(66만원), 7천만원 초과(50만원)</li> </ul> </td> </tr> <tr> <td>자녀세액공제 (p.177) (손자녀 적용불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1명(15만원), 자녀 2명(30만원), 자녀 3명 이상 : 30만원+2명 초과 1인당 30만원</li> <li>· 출생·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li> <li>*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li> </ul> </td> </tr> <tr> <td>연금계좌 (p.178) (12%·15%)</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한도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한도:연금저축액포함 700만원)</li> <li>* 50세 ↑ 한도확대:연금지출계좌 400→600만원, 퇴직연금계좌 연금지출액포함 700→900만원</li> </ul> </td> </tr> <tr> <td>보험료(12%·15%) (p.183)</td> <td>· 보장성보험료(저축성 제외) 12%(한도 100만원) · 장애인연금 보장성보험료 15%(한도 100만원)</td> </tr> <tr> <td>의료비 (p.185) 산식 : (㉠+㉡)×15%·20%·30%</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난임시술비(30%)</li> <li>· ㉡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3%(한도 700만원)</li> <li>* 단 ㉡의 금액 &lt; 총급여액×3%인 경우 그 미달금액을 ㉠에서 차감 후 15%·20%·30% 적용</li> <li>*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li> </ul> </td> </tr> <tr> <td>교육비(15%) (p.190) (학자금대출상환액포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 전액(대학원 포함)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한도(대학원제외)</li> <li>· 취학전 아동·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한도(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li> <li>· 장애인재활교육 목적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li> </ul> </td> </tr> <tr> <td>기부금 (p.200) (100/110·15·20·25·35%)</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 25%)</li> <li>· 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 35%)</li> <li>· 한도 : 정치자금·법정(전액), 우리사주조합(근로소득·정치자금·법정×30%)</li> <li>· 지정 ①종교단체無(㉠×30%), ②종교단체有(㉠×10%+MIN(㉠×20%, 종교단체외 기부액))</li> <li>*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li> </ul> </td> </tr> <tr> <td>월세액(15%·17%) (p.213) (외국인도 공제 가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무주택 근로자 1인당 국민주택규모 주소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年 750만원 한도)의 15% 공제</li> <li>·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제외)는 17% 적용</li> </ul> </td> </tr> <tr> <td>외국납부세액 (p.217)</td> <td>· 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td> </tr> </table>	근로소득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분 30%공제</li> <li>· 한도 : 총급여액 3천3백이하(74만원), 7천만원 이하(66만원), 7천만원 초과(50만원)</li> </ul>	자녀세액공제 (p.177) (손자녀 적용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1명(15만원), 자녀 2명(30만원), 자녀 3명 이상 : 30만원+2명 초과 1인당 30만원</li> <li>· 출생·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li> <li>*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li> </ul>	연금계좌 (p.178) (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한도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한도:연금저축액포함 700만원)</li> <li>* 50세 ↑ 한도확대:연금지출계좌 400→600만원, 퇴직연금계좌 연금지출액포함 700→900만원</li> </ul>	보험료(12%·15%) (p.183)	· 보장성보험료(저축성 제외) 12%(한도 100만원) · 장애인연금 보장성보험료 15%(한도 100만원)	의료비 (p.185) 산식 : (㉠+㉡)×15%·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난임시술비(30%)</li> <li>· ㉡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3%(한도 700만원)</li> <li>* 단 ㉡의 금액 &lt; 총급여액×3%인 경우 그 미달금액을 ㉠에서 차감 후 15%·20%·30% 적용</li> <li>*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li> </ul>	교육비(15%) (p.190) (학자금대출상환액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 전액(대학원 포함)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한도(대학원제외)</li> <li>· 취학전 아동·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한도(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li> <li>· 장애인재활교육 목적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li> </ul>	기부금 (p.200) (100/110·15·20·25·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 25%)</li> <li>· 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 35%)</li> <li>· 한도 : 정치자금·법정(전액), 우리사주조합(근로소득·정치자금·법정×30%)</li> <li>· 지정 ①종교단체無(㉠×30%), ②종교단체有(㉠×10%+MIN(㉠×20%, 종교단체외 기부액))</li> <li>*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li> </ul>	월세액(15%·17%) (p.213) (외국인도 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무주택 근로자 1인당 국민주택규모 주소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年 750만원 한도)의 15% 공제</li> <li>·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제외)는 17% 적용</li> </ul>	외국납부세액 (p.217)	· 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분 30%공제</li> <li>· 한도 : 총급여액 3천3백이하(74만원), 7천만원 이하(66만원), 7천만원 초과(50만원)</li> </ul>																		
자녀세액공제 (p.177) (손자녀 적용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1명(15만원), 자녀 2명(30만원), 자녀 3명 이상 : 30만원+2명 초과 1인당 30만원</li> <li>· 출생·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li> <li>*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li> </ul>																		
연금계좌 (p.178) (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한도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한도:연금저축액포함 700만원)</li> <li>* 50세 ↑ 한도확대:연금지출계좌 400→600만원, 퇴직연금계좌 연금지출액포함 700→900만원</li> </ul>																		
보험료(12%·15%) (p.183)	· 보장성보험료(저축성 제외) 12%(한도 100만원) · 장애인연금 보장성보험료 15%(한도 100만원)																		
의료비 (p.185) 산식 : (㉠+㉡)×15%·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난임시술비(30%)</li> <li>· ㉡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3%(한도 700만원)</li> <li>* 단 ㉡의 금액 &lt; 총급여액×3%인 경우 그 미달금액을 ㉠에서 차감 후 15%·20%·30% 적용</li> <li>*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li> </ul>																		
교육비(15%) (p.190) (학자금대출상환액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 전액(대학원 포함)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한도(대학원제외)</li> <li>· 취학전 아동·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한도(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li> <li>· 장애인재활교육 목적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li> </ul>																		
기부금 (p.200) (100/110·15·20·25·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 25%)</li> <li>· 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 35%)</li> <li>· 한도 : 정치자금·법정(전액), 우리사주조합(근로소득·정치자금·법정×30%)</li> <li>· 지정 ①종교단체無(㉠×30%), ②종교단체有(㉠×10%+MIN(㉠×20%, 종교단체외 기부액))</li> <li>*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li> </ul>																		
월세액(15%·17%) (p.213) (외국인도 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무주택 근로자 1인당 국민주택규모 주소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年 750만원 한도)의 15% 공제</li> <li>·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제외)는 17% 적용</li> </ul>																		
외국납부세액 (p.217)	· 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본 자료는 세법 상 공제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및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액 공제요건]**

구분	공제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 공제 (p.111)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62.12.31.이전)	○	△ (주거행방상별거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02.1.1.이후)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추가 공제 (p.112)	위탁아동	18세 미만	○		
	장애인	×	○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52.12.31. 이전 생)			
	부녀자(50만) 한부모(100만)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총합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p.146)	×	○			
특별 세액 공제 (p.181)	보장성보험료	○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의료비	×	×		
	교육비	×	○		
기부금	×	○	과세연도 지출한 비용을 공제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b>표준세액공제(13만원)</b> 적용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 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급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p.146**

구분	내용
공제 대상자	① 근로소득자 본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공제율	① (15%)신용카드 ② (30%)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③ (40%)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④ (80%)'22.7월~12월 대중교통 이용분 ⑤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
공제금액 계산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액의 10% 포함)=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 ② '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③ 공제액 = (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15% (30%·40%·80%) + ②의 금액 × 20%
한도액	기본한도(MIN(총급여액 × 20%, 300만원) * 추가한도 금액(최대4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 1.2억원 이하자(250만원), 1.2억원 초과자(200만원) ■ 추가한도: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100만원), 전년도 대비 소비저가분(100만원)
공제제외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료 또는 공제불입금 ③ 초·중·고·대학·보육시설 등 수업료 및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 ④ 조세, 전기·수도·전화·가스료, TV 시청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대여사업의 리스료(대여료 포함) ⑥ 자동차 등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중고차는 가능) ⑦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www.hometax.go.kr)**

**■ 제도개요**

○ 근로자 동의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일괄제공 서비스 접근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 ① 회사 신청 :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22.11.30, 부득이한 경우 '23.1.14.까지 가능)
- ② 근로자 확인(동의): 일괄제공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확인(동의)('23.1.19)
- ③ 자료 내려받기: 회사가 간소화 자료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23.3.10.)

※ 근로자 확인(동의)시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 삭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금액 중복적용 여부]**

구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부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구분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주택관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법 87② (p.13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52조④ (p.1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세법52조⑤ (p.126)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법 95조의2 (p.213)
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대출기간, 보충청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 자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 차입금 상환액 ※외국인 공제 가능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에 해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권 또는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액공제 ※외국인 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외국인 공제 가능
기타	근로자인 세대주 본인 명의의 납입분만 공제가능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①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일용근로자 제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② 세대주 요건 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③ 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에 거주할 것		
요건	·청약저축 (240만원 이하 납입액) ·주택청약종합저축 (240만원 이하 납입액)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월 15만원 이하)	( <u>차입금 요건</u> ) 1) 대출기간 차입 시 : 입주일, 전입일(갱신, 이주 포함)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하고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2) 거주자 차입 시 : 급여 5천이하 근로자가 전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1.2%이상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채무자가 자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일 것	·총급여 7천만원 (종합 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중서의 주소자와 주민등록본분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대상 주택	(09.12.31.이전 기입자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소유시에도 공제가능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규모요건 삭제('14년부터) ·취득 기준시가 5억 이하 ('19년 이전 차입시 기준시가 4억 1) ('13년 이전 차입시 국민주택 규모 + 기준시가 3억 1) ·오피스텔제외	·국민주택규모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고시원 *부양가족명의의 임대계약 체결 주택 공제가능
공제 금액	납입액의 40%	원리금 상환액의 40%	이자상환액	월세액의 15% (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 17%)
공제 한도	연 500만원 한도 (· 15년이상+고정금리 + 비거차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 · 15년이상+고정금리 or 비거차식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 10년~15년미만+고정금리 or 비거차식분할상환인 경우 300만원)	연 400만원 한도		연 750만원 한도 (월세액)
증명 서류	·주택마련저축납입 증명서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자 차입시)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및계좌이체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가액 등 확인서류 (공시가격 알리미)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의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를 제출취급기관에 익년 2월까지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공제 받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로 작성 및 상환필요 ·법인, 각종공제회 차입금 제외	·무허가주택, 농거포착 포함 ·사업용, 판매목적주택 포함 ·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소유로 볼 (상속 제외)	·등본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중서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

※ 2022.12.31.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 서비스 오픈 일정 2023.1.15. 이후 제공 예정

■ 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14종 자료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의 공제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 ①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 동의없이 조회 가능
- ② 19세 이상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 가능

■ 자료 제공동의 신청 방법

- 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
- ② 홈택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 (연말정산→연말정산 제공동의)
- ③ 사무서 방문 신청 (제공동의 신청서 제출)

※ 제공동의 시 부양가족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필요